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10. 19 선고 2022가단113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9.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의 2021. 1. 20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 2. 소송비용은
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남기정

별지